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21-학인-00013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학교 학생)
피 해 자 ○○○(○○○○학교 학생)
피 신 청 인 ○○○(○○○○학교 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엮드려뺨쳐를 시키고, 도구를 사용하여 엉덩이를 7회 체벌하고,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하여, 신청인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신분상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나.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원인이 복장 등을 검사하는 등교지도이고, 등교지도의 근거가 학교생활규정이므로, 복장 등을 검사하는 등교지도

등은 폐지하고 학교생활규정 또한 인권우호적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한다.

다. 교사의 체벌 등에 노출된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신청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학교장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인권침해 우려가 많은 학교생활규정을 인권 우호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컨설팅을 요청하고, 즉시 개정하도록 권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21. 09. 28.(화)

나. 신청인 : ○○○(○○○○학교 ○학년)

다. 피해자 : ○○○(○○○○학교 ○학년)

라. 피신청인 : ○○○(○○○○학교 ○-○ 담임교사, ○학년부장, ○○)

마. 신청요지 : 2021. 9. 14.경 피신청인이 청테이프로 감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영덩이를 7회 폭행하였다.

2. 관련규정

[붙임] 과 같다.

3.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피해자)의 주장

1) ○○○○학교는 등교할 때 ○층에서 복장검사를 하는데, 복장에 문제가 있으면 담당 학년 교사에게 가서 명단에 이름을 적고 교실로 간다.

2) 2021년 9월 1일(수) 명찰을 소지하지 않은 줄 알고 ○학년 담당 교사에게 가려 했는데, ○학년 교사가 자리에 있지 않아 ○학년 담당 교사(피신청인)한테 가서 “○○○ 쌤 어딴어요? 제가 명찰이 없어가지고.” 그러자 피신청인이 “니 가슴팍에 있는 게 뭐냐.”라고 했고, 신청인의 와이셔츠 주머니에 명찰이 있어, “아.” 한마디 하고 명찰을 꺼내서 장착한 다음 “감사합니다.”했더니, 피신청인이 “장난하냐? 재밌냐?”라고 말했다.

“쌤 덕분에 찾았으니까 감사하죠.” 하니, 피신청인은 “말장난하냐? 년 이게 우습냐?” 등의 대화를 하다가 옆드리라고 해서 신청인이 “이건 아니죠.” 했더니, 피신청인이 “그럼 어디까지 해볼까. 선생이 쓸 수 있는 권력을 다 쓰겠다. 일단 부모님 불러와라, 징계위원회라도 열어줄까, 학교 생활에 지장 있게 해주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몇 마디 더 대

화를 나누다가 피신청인이 옆드리라 하여 옆드렸다.

수백 명이 지나다니는 입구에서 옆드려 모욕감을 느꼈고, 수 분 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어나라고 한 후에 “○층 ○○실로 올라가라. 곧 따라 올라가겠다.”고 말하였으나, 신청인은 가지 않았다.

3) 2021년 9월 14일(화)경 신청인이 아침에 등교지도를 하는 피신청인을 만났고, 피신청인이 “너, 그때 ○○실 안 왔지. 따라 올라와라.”고 하여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 ○학년 ○○실로 올라가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9월 1일경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피신청인이 “무슨 말을 하든 신청인 니가 잘못된 게 맞다.” 라고 했으며, “니가 그냥 한 번에 옆드렸으면 3분 만에 끝났을 거다. 3분만 옆드리게 하려고 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드려 있어라.”고 하여, 신청인이 (○층)엘리베이터 문 앞에 옆드렸다.

잠시 후 피신청인이 ○○실에서 청테이프를 감은 두꺼운 도구를 쥐고 나와 신청인에게 “가로로 좀 옆드려 봐라.” 말하고, 신청인이 방향을 바꾸어 옆드리자 “엉덩이에 힘 짝 쥐라.” 말하고, 7대를 구타하였는데 평평 소리나게 세게 때렸다.

4) 피신청인이 “힘 짝 쥐라.”라고 말하며 다시 때리려 하자,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에 일어났는데, 화가 치밀어서 피신청인에게 처음으로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신청인이 “너, 뭐라 했냐. 다시 한 번 말해 봐라.”며 신청인의 멱살을 잡았고, 말을 하지 않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실로 데리고 갔다.

5)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대화를 하자며 키를 들고 ○○실로 데리고 갔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나는 너에게 편견이 있었던 게 맞다. 너를 감정을 담아 때린 게 맞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체벌을 자주 하는

편이며 교장에게 여러 경고를 받았고 학부모와 민원에 시달린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2021. 9. 1.(수) 아침 경 피신청인이 ○층 현관에서 등교지도 중,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렸고, 이와 관련한 대화 중에 신청인을 열체크 카메라 뒤쪽 구석에 옆드리게 하였다.

2) 피신청인이 옆드려 있던 신청인에게 ○층 ○학년 ○○실에 가 있다고 했으나 신청인이 ○○실에 가지 않았다.

3) 9월 14일 등교지도 중에 신청인을 만나는데, 2주 전에 도망간 것이 생각나서, 혼자 보내면 안 될 거 같아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에 올라가서 교무실 제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며, 왜 안 왔는지를 물었는데 신청인이 “가봤자 선생님이 없을 거 같아서 안 왔다”라고 해서, “선생님 올라가라고 했는데 왜 도망갔냐”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 같아서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옆드려 있어”라고 말하고, 청테이프로 감은 도구(알루미늄 소재 대결레 자루를 반으로 접어 청테이프로 감음)로 엉덩이 부분을 7회 가격하였다.

4) 체벌 이후 ○○실로 신청인을 데리고 갔고, 이후 옆에 있는 논술실에서 신청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체벌에 대해 사과했다.

5) 최근에는 체벌 기억이 없으며, 예전에 1년에 1~2회 정도였던 것 같고, 수업 외 시간에 학생지도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었다.

6) 체벌 이후 ○○실에서 학생과 이야기하면서 “나는 체벌을 자주하는 편이며, 교장에게 여러 경고를 받았고, 학부모와 민원에 시달린 적이 있

어.”라고 말했는데, 벌에 대해 우습게 생각하는 거 같고 필요하다면 벌을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했다.

4.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1) 9월 1일경 ○층 ○○ 등교지도 중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명찰을 달지 않은 사실을 알렸고, 이와 관련한 대화 중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열체크 카메라 뒤에 옆드리게 하였다.

2) 피신청인이 옆드려 있던 신청인에게 ○층 ○학년 ○○실에 가 있으라고 했으나 신청인이 ○○실에 가지 않았다.

3) 9월 14일경 피신청인이 등교지도 중에 신청인을 만나자 함께 ○층 ○○실로 올라갔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엘리베이터 앞에 옆드리게 한 후 청테이프로 감은 도구(알루미늄 소재 대걸레 자루를 반으로 접어 청테이프로 감음)로 신청인의 엉덩이를 7회 체벌하였다.

4)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체벌한 후, 40여 초 동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목살을 잡고 이야기하였다.

5) 이후 ○○실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체벌 등을 사과하였다.

나.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 인격권과 차별 등으로 인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위 인정사실 1), 4)항과 같이 피신청인은 9월 1일 ○○○○에서, 9월 14일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차례, 신청인에게 옆드려뺨쳐를 하도록

하였다.

인정사실 4)항과 같이 9월 14일 피신청인이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7회 체벌하고, 인정사실 5)항과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목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신청인에게 옆드려뺨쳐를 시키고, 도구를 사용하여 엉덩이를 여러 차례 체벌하고 목살을 잡는 등의 폭력행위를 하여, 피해학생의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에게 옆드려 뺨쳐를 하도록 하고 체벌한 공간은 학생과 교직원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이며, 공개된 장소에서 폭력에 노출된 피해학생이 느꼈을 수치심, 모욕감, 분노감 등이 상당하였다고 보여져, 인격권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에 더해 피신청인이 피해학생 외 다른 학생에게도 같은 방식의 폭력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다른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침해하였다.

다. 소결

피신청인은 등교지도 과정에서 명찰을 차고 있지 않은 신청인이 반성하지 않고 말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많은 학생이 다니는 현관에서 옆드리게 하고, 이후에도 신청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입구에 옆드리게 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엉덩이를 체벌하고,

먹살을 잡는 행위를 하였다.

학교생활 중에 학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학생의 말하는 태도 등을 문제 삼아 관련 법령이 금지한 체벌을 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할 수 없다.

이에 더해, 피신청인이 체벌 다음날, 신청인에게 전화로 사과를 하면서, 등교지도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만나달라고 계속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원하는 사과의 방식이라 할 수 없으며, 가피해자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에게 등교지도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만나달라고 하는 행위는 2차 피해에 해당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19.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정 경 아 (인)

[붙임]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차별은 금지된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학생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